

1

용어의 정의\*\* \* 10 강원, 11 부산장, 15 부산, 16 위, 20, 22 소방교, 23 소방장

- ① “**감식**”이란 화재원인의 판정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주로 **시각**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감정**”이란 화재와 관계되는 물건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성질 등 이와 관련된 모든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 방법에 의한 필요한 실험을 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화재원인을 밝히는 자료를 얻는 것을 말한다.
- 
- ③ “**발화**”란 열원에 의하여 가연물질에 지속적으로 불이 붙는 **현상**을 말한다.
  - ④ “**발화열원**”이란 발화의 최초원인이 된 **불꽃 또는 열**을 말한다. 예) 담뱃불
  - ⑤ “**발화지점**”이란 열원과 가연물이 상호작용하여 화재가 시작된 **지점**을 말한다. 예) 소파부근
  - ⑥ “**발화장소**”란 화재가 발생한 장소를 말한다. 예) 우리집 안방, 거실
  - ⑦ “**최초착화물**”이란 발화열원에 의해 불이 붙고 이 물질을 통해 제어하기 힘든 화세로 발전한 가연물을 말한다. 예) 커튼 \* 10강원
  - ⑧ “**발화요인**”이란 발화열원에 의하여 발화로 이어진 연소현상에 영향을 준 인적·물적·자연적인 요인을 말한다.
  - ⑨ “**발화관련 기기**”란 발화에 관련된 불꽃 또는 열을 발생시킨 기기 또는 장치나 제품을 말한다.
  - ⑩ “**동력원**”이란 발화관련 기기나 제품을 작동 또는 연소시킬 때 사용되어진 연료 또는 에너지를 말한다.
  - ⑪ “**연소확대물**”이란 연소가 확대되는데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가연물을 말한다. \* 10 강원
  - ⑫ “**재구입비**”란 화재 당시의 피해물과 같거나 비슷한 것을 재건축(설계 감리비를 포함한다) 또는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 ⑬ “**내용연수**”란 고정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수를 말한다. (\* 약 몇 년 쓰는 물건인가)
  - ⑭ “**손해율**”이란 피해물의 종류, 손상 상태 및 정도에 따라 피해액을 적정화시키는 일정한 비율을 말한다. 예) 냉장고가 완전히 타면 100%, 재사용 가능하면 50%로 계산한 비율
  - ⑮ “**잔가율**”이란 화재 당시에 피해물의 재구입비에 대한 현재가의 비율을 말한다. 예) 중고가 비율
  - ⑯ “**최종잔가율**”이란 피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다한 경우 **잔존**하는 가치의 재구입비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예) 고철값 등 \* 오답: 최종잔가율은 화재 당시 피해물의 재구입비에 대한 현재가 비율
  - ⑰ “**화재현장**”이란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대 및 관계자 등에 의해 소화활동이 행하여지는 장소이다.
  - ⑱ “**접수**”란 119상황실에서 화재 등의 신고를 받은 최초의 시각을 말한다.
  - ⑲ “**출동**”이란 화재를 접수하고 119상황실로부터 출동지령을 받아 소방대가 소방서 차고에서 출발하는 것을 말한다.
  - ⑳ “**도착**”이란 출동지령을 받고 출동한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말한다.
  - ㉑ “**선착대**”란 화재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소방대를 말한다.
  - ㉒ “**초진**”이란 소방대의 소화활동으로 화재확대의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 ㉓ “**잔불정리**”란 화재를 **진압한 후**, 잔불을 점검하고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열에 의한 수증기나 화염 없이 연기만 발생하는 연소현상이 포함될 수 있다. 화재 안전 후(x) 23장
  - ㉔ “**완진**”이란 소방대에 의한 소화활동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을 말한다.
  - ㉕ “**철수**”란 진화가 끝난 후, 소방대가 현장에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 ㉖ “**재발화 감시**”란 화재를 진화한 후 화재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조를 편성하여 일정시간동안 감시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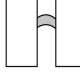


## 2 기타 주요법령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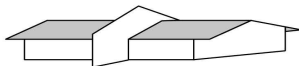
### (1) 화재건수의 결정(제10조)\*\* ☆ 19 소방교, 20 소방장, 21 소방교, 위, 22 소방장

1건의 화재란 : 1개의 발화점으로부터 확대된 것으로 발화부터 진화까지이다. 다음의 예외를 둔다.

- ①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은 동일 대상물에서 발화했더라도 각각 별건의 화재로 한다. ☆ 19 소방교, 20 소방장
- ② 동일 소방대상물의 발화점이 2개소 이상 있는 다음 화재는 1건의 화재로 한다.
  - ㉠ 누전점이 동일한 누전에 의한 화재
  - ㉡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에 의한 다발화재
- ③ 발화지점이 1곳인 화재현장이 2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화재는 발화지점이 속한 소방서에서 1건의 화재로 산정한다. 다만, 발화지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화재피해금액이 큰 관할구역 소방서의 화재 건수로 산정한다. ☆ 22 소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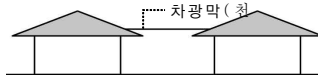
### (2) 건물동수 산정(별표1)\*\* 08, 12, 21 위, 23 소방교

- ① 주요구조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1동으로 한다. 다만 건널복도 등으로 2 이상의 동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그 부분을 절반으로 분리하여 각 동으로 본다. 
- ② 건물의 외벽을 이용하여 실을 만들어 헛간, 목욕탕, 작업실, 사무실 및 기타 건물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 건물과 같은 동으로 본다. 
- ③ 구조에 관계없이 지붕 및 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같은 동으로 본다. ☆ 20 소방장 
- ④ 목조 또는 내화조 건물의 경우 격벽으로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도 같은 동으로 한다.



☆ 19 소방교

- ⑤ 독립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차광막, 비막이 등의 덮개를 설치하고 그 밑을 통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른 동으로 한다. (작업장과 작업장 사이에 조명유리 등으로 비막이를 설치하여 지붕과 지붕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 ⑥ 내화조 건물의 옥상에 목조 또는 방화구조 건물이 별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다른 동으로 한다. 다만, 이들 건물의 기능상 하나인 경우(옥내 계단이 있는 경우)는 같은 동으로 한다. ☆19 소방교
- ⑦ 내화조 건물의 외벽을 이용하여 목조 또는 방화구조건물이 별도 설치되어 있고 건물 내부와 구획되어 있는 경우 다른 동으로 한다. / 다만, 주된 건물에 부착된 건물이 옥내로 출입구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와 기계설비 등이 쌍방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등 건물 기능상 하나인 경우는 같은 동으로 본다.

(\*^^ 키워드-☞ 같은동: 연결, 이용, 기능하나 / 다른동: 분리, 별도)

(3) 발화일시의 결정(제11조)\*

발화일시의 결정은 관계인들의 화재발견 상황통보(인지)시간 및 화재발생 건물의 구조, 재질 상태와 화기취급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 다만, 자체진화 등 사후인지 화재로 그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화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4) 사상자(제13~14조)\*

화재현장에서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람을 말한다. 단, 화재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로 본다. \* 19 소방교, 20 소방장

- ❖ 부상의 정도는 의사의 진단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제37조)
  - 중상 : 3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 \* 3주이상+입원 )
  - 경상 : 중상 이외의 부상(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포함 / 단순연기흡입자 제외),

(5) 화재의 소실정도(제16조)\*\* \* 09, 16 위, 21 소방교 (\* P.16과 중복이론)

전소	건물의 70% 이상(입체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함.)이 소실되었거나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이 보수를 하여도 재사용 불가능한 것
반소	건물의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것
부분소	전소, 반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 ▶ (상대적)오담: 30% 미만

\* 자동차·철도차량,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소실정도는 위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소실면적의 산정(제17조)\* \* 10 강원, 19 소방교, 21 소방교, 20, 22 소방장

건물의 소실면적 산정은 소실 바닥면적으로 산정한다.(수손 및 파손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

- 보충(Tip): 소실정도 vs 소실면적 산정 \* 21 소방장
  - 소실정도(%)를 구분하는 방법은 입체면적으로 한다. ▶ 정입면비, ㄹㅇㅁㅂ, 장어먹보
  - 건물의 소실면적(m<sup>2</sup>)산정은 소실 바닥면적으로 한다. \* 오담: 면적산정은 입체면적

(7) 화재피해액의 산정(제18조)\*

건물 등 자산에 대한 최종잔가율은 건물·부대설비·구축물·가재도구는 20%로 하며, 그 이외의 자산은 10%로 정한다.

(8) 세대수 산정(제19조)

세대수는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 독신자로서 자신의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에 대하여 재산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1세대로 한다. (\*^^ 집주인과 임차한 셋방 주민도 각각 1세대로 한다는 뜻)

**(9) 화재 합동 조사단 운영 및 종료(제20조)**

① 소방관서장은 대형화재 발생 시 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방청장	사상자가 30명 이상이거나 2개 시도 이상에 발생한 화재(임야화재 제외)
소방본부장	사상자가 20명 이상이거나 2개 시군구 이상에 발생한 화재
소방서장	사망자 5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 재산피해액이 100억 원 이상 발생한 화재

- ② 소방관서장은 단장 1명과 단원 4명 이상을 화재합동조사단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다.  
 ③ 단원은 화재현장지휘자, 조사관, 소방대원과 협력하여 조사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0) 조사보고(제22조)**

① 조사관이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소방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 화재·구조·구급 상황보고서를 작성·보고해야 한다.

긴급상황보고에 해당하는 화재	화재 인지로부터 30일 이내, (* <b>요약</b> ☞ <b>보고: 10일 / 일반: 15일 / 긴급: 30일</b> )
일반 화재	화재 인지로부터 15일 이내 (* <b>^^</b> 중요하지 않으니)
조사보고를 연장할 수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수사기관의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li> <li>② 화재감정기관 등에 감정을 의뢰한 경우</li> <li>③ 추가 화재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li> </ul>

※ 조사 보고일을 연장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관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며, 조사결과 는 영구보존방법에 따라 보존한다.

**3 기타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 내용**

**제3조(화재조사의 개시 및 원칙)**

- 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관(이하 "조사관")은 화재 발생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화재조사(이하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조사관을 근무 교대조별로 2인 이상 배치하고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③ 조사는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합리적인 사실의 규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화재조사관의 책무)**

- ① 조사관은 그 직무를 이용하여 관계인등의 민사분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대원은 조사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확인하고, 화재현장에서도 소방 활동 중에 파악한 정보를 조사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제5조)

**제6조(관계인등 협조)**

- ① 화재현장과 기타 관계있는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관계인등의 입회 하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사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인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등이 반환을 요구할 때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한 후 관계인등에게 반환해야 한다.

### 제7조(관계인등 진술)

- ① 관계인등에게 질문을 할 때에는 시기, 장소 등을 고려하여 진술하는 사람으로부터 임의진술을 얻도록 하며 진술의 자유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방법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관계인등에게 질문을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압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도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획득한 진술이 소문 등에 의한 사항인 경우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관계인등의 진술을 얻도록 해야 한다. / ④ 관계인등에 대한 질문 사항은 질문기록서에 작성하여 그 증거를 확보한다.

### 제8조(감식 및 감정)

- ① 소방관서장은 조사 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소방연구원 또는 화재감정기관 등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② 소방관서장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화재원인 규명을 위하여 화재현장에서 수거한 물품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고 화재원인 입증을 위한 재현실험 등을 할 수 있다.

### 제12조(화재의 분류)

소방청장이 정하는 국가화재분류체계에 의한 분류표에 의하여 분류한다.

### 제18조(화재피해금액 산정)

- ① 화재피해금액은 화재 당시의 피해물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를 재건축 또는 재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가액에서 경과연수 등에 따른 감가공제를 하고 현재가액을 산정하는 실질적·구체적 방식에 따른다. 다만,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피해물품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화재피해금액 산정매뉴얼」(이하 "매뉴얼")의 간이평가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 ③ 건물 등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23조(화재증명원의 발급)

-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피해자로부터 소방대가 출동하지 아니한 화재장소의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후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② 재산피해내역 중 피해금액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피해물건만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민원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금액을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 제24조(화재통계관리)

소방청장은 매년 통계연감을 작성하여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등에 공표해야 한다.

### 제25조(조사관의 교육훈련)

의무 보수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나는 xxx이다.

---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일로 주위 사람들과 부족함을 증명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주위 동료들과 비교함에 기죽지 말고 xxx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